

방역수칙 위반 처분기준 및 예시 (제2판)

2021. 9. 29(수).

질 병 관 리 청

1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분 규정

□ 방역수칙 위반사례 별칙 근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호(집합제한금지)**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위반시 적용법칙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제2호의2~제2호의4)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 (제3호) 제81조에 따른 벌금(200만원) 사항

- **제2호의2(방역지침 준수명령)**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위반시 적용법칙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시행령 제33조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0(행정처분 기준)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 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별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u>150</u>	<u>300</u>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별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u>10</u>	<u>10</u>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운영자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별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u>운영중단 10일</u>	<u>운영중단 20일</u>	<u>운영중단 3개월</u>	<u>폐쇄명령</u>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u>운영중단 10일</u>	<u>운영중단 20일</u>	<u>운영중단 3개월</u>	<u>폐쇄명령</u>

②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 처분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중수본) 및 지자체별 행정명령에 따라 적용기준 변경 가능

주요 방역수칙 (공통)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① 집합금지	고발 조치	고발 조치	· 법 제49조제1항 제2호 · 법 제80조제7호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영업시간 준수	고발 조치	고발 조치	
③ 사적모임 인원제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2 ·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별표 10
④ 거리두기(단계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⑤ 출입명부 작성·관리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순 관리미흡 등은 예외 가능)	과태료	
⑥ 음식섭취 금지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 관리자·운영자 몰래 이용자가 반입한 경우 예외 가능)	과태료	
⑦ 마스크 착용 준수	즉시 시정 안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즉시 시정 안할 경우 과태료	
⑧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우선 계도	우선 계도	
⑨ 환기하기			
⑩ 소독하기			
⑪ 손씻기			
⑫ 유증상자 출입제한			

* 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고발 조치도 가능

③ 시설별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행위 처분기준 예시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중수본) 및 지자체별 행정명령에 따라 적용기준 변경 가능

주요시설	주요 방역수칙 위반내용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목욕장업	수면실 이용금지조치 위반 (2단계 이상)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 이용자가 관리·운영자 몰래 무단 이용시 예외적용 가능)	무단이용시 처벌가능	· 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2 ·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별표 10
체육시설	샤워실 관련 운영규정 위반 (3단계 이상)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 이용자가 관리·운영자 몰래 무단 이용시 예외적용 가능)	무단이용시 처벌가능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직접접촉운동 금지 조치 위반 (3단계 이상)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 이용자가 관리·운영자 몰래 무단 이용시 예외적용 가능)	무단이용시 처벌가능	
상점, 마트, 백화점 (300㎡이상)	집객행사 금지조치 위반 (2단계 이상)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스포츠경기 관람장	무관중 경기 조치 위반 (4단계 이상)	과태료 및 행정처분	무단이용시 처벌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행사주최금지 위반 (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2단계 이상)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행위 확인 시 처벌가능	

4 방역수칙 위반사례 처분 관련 사례 예시

※ 다음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중수본)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집합금지

Q1. 집합금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집합금지는 통상 영리의 목적과 관계없이 2인 이상의 모임 금지를 의미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 내 1그룹시설(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펍게임장)은 집합금지*(법 제49조제1항제2호) 적용 대상임

Q2.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고발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추가 제재조치가 가능한가요?

- 현행법상 집합금지(법 제49조제1항제2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 가능하며, 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과태료부과 또는 행정처분(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조치는 어려우며, 고발 조치가 진행 중임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계속적 추가 고발 조치는 가능
- ※ 행정처분(운영중단)은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행위(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대해 적용 가능한 처분으로서 집합이 허용된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2인 이상의 집합을 원천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에 적용 시 법령 위반의 소지

Q3.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고의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할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가 가능한가요?

-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고의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 시설임을 알고도(예. 집합금지 대상시설 안내문 부착 등) 방문(이용)했을 경우 고발조치 가능
- *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이용자를 속이고 영업을 하여 이용자가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 시설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이용)했을 경우 벌칙 제외 가능.

② 운영시간 제한

Q1. 영업주는 손님에게 영업종료 안내 및 퇴실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게시물 부착 또는 구두 안내 필요
 - 관리·운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예시간 20분 이후에도 착석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해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 가능.(다만, 이용자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또는 유예시간 20분 이내 이석한 경우 적용 예외)
 - 고의성이 없는(게시물 부착 또는 구두 안내) 관리·운영자에 대해서는 계도
 - ※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에 해당하므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Q2. 현재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준수' 방역수칙 관련, 영업 제한시간 종료 이후 해당 업소 내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경우 방역수칙 위반인지? 위반이라면 어떤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중인 '영업시간 준수' 방역수칙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서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해당 시설의 관리의무는 계속되므로 해당 시설내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 모임을 할 경우,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 조치 가능

Q3. 집합금지는 통상 영리의 목적과 관계없이 2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하였는데, 관리·운영자 및 종업원 2인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익일 영업준비를 위해 업소 내 남아있는 경우도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영업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업의 마무리 및 익일 영업 준비 등을 위한 행위는 허용 가능

Q4.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22:00~05:00까지는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한데, 이 경우 포장을 위해 영업장 내 대기하는 것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영업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포장 음식(물)의 픽업을 위한 대기는 허용 가능

③ 사적모임 인원 제한

Q1. 입장 시에는 사적모임 인원 준수를 하였으나, 지인, 가족 등의 이유로 (잠시)합석을 한 경우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 시설 내에서 지인을 만나는 경우라도 식사 등을 위한 **합석행위**는 금지대상이므로 방역수칙 위반 및 행정처분 대상임.
- 따라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관련 안내물을 부착하거나, 모임 인원 초과를 인지한 순간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즉각 주지시켜야 함.
 - ※ (관리·운영자) 모임인원 **미준수를 인지**하고 입장을 시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 즉시 처분 가능
 - ※ (이용자) 모임인원수 초과가 확인된 경우 즉시 처분 가능

Q2. 돌봄이 필요한 노약자 및 장애인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산정의 범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아동돌보미, 활동보조인 등은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중수본, '21.7.26.)

④ 밀집도 완화(단계별 시설이용인원 기준)

Q1. (단계별 기준 적용) 시설 내 단계별 이용가능 좌석수를 초과하여 인원을 참여시킨 경우 또는 시설 내 세부 방역수칙을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처분?

- 단계별 이용 가능한 인원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참여시킨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가능

⑤ 출입명부 작성·관리

Q1. (출입명부) 출입명부 작성·관리 소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출입명부 작성은 크게 수기명부, 콜체크인, QR인증 등 3가지 방식이 있음.
 - 수기명부의 경우, 출입문 구역 등에 상시 비치하여 모든 출입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에 불응할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이를 미 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대상임.
 - 콜체크인 및 QR코드의 경우, 입장 시 바로 인증 체크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불응할 경우 시설 이용 불가 조치하여야 함. 미이행 시 행정처분 부과대상임.
 - ※ (관리·운영자) 출입자명부 미 비치 시 즉시 처분 가능
 - ※ (이용자) 작성 거부 시 즉시 처분 가능

Q2. (출입명부) 원래 QR코드 인증방식으로 출입명부 관리하던 곳인데, 기계 고장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계결함으로 인하여 출입명부관리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콜체크인, 수기명부 등 즉시 대체가능한 수단을 상시 준비하여야할 것을 안내하고, 추후 불응 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지.

Q3. (출입명부) 수기명부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부과 대상인가요?

- 출입명부의 보관기간이 4주이므로, 그 기간 내 폐기하였다면 출입자명부관리 소홀로 볼 수 있음. 우선 계도조치 후 재차 위반 시 처분 가능 안내.

⑥ 음식물섭취 금지

Q1. (음식물섭취_공통, 일부시설 제외)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시설 운영자 몰래 음식물 또는 주류를 반입하여 시설내에서 섭취했을 경우 또는 이용자 및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이용자가 음식물 등을 몰래 반입하여 시설 내에서 섭취하였을 경우 이용자 과태료 부과, 이용자의 음식물 등 반입을 알고도 운영자가 묵인하여 시설 내에서 섭취하였을 경우 이용자 및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가능

- 특히,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였을 경우, 음악산업법에 따른 벌칙 등* 병과 가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또는 제28조(과징금 부과), 제34조 제3항제2호(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단, 물·무알콜 음료를 시설 내에서 섭취하였을 경우는 예외

*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관리·운영자)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4차이상 위반시 폐쇄명령

Q2. (음식물섭취_공통, 일부시설 제외)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시설 이용 도중 운영자에게 주류 등 음식제공을 간곡히 요청하여 운영자가 이에 응했을 경우의 처분 가능여부?

○ 어떤 이유에서든 시설의 운영자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음식물 반입을 묵인한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및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가능

- 특히, 이용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음악산업법에 따른 벌칙 등* 병과 가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제34조제3항제2호(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단, 물·무알콜 음료를 시설 내에서 섭취하였을 경우는 예외

⑦ 마스크착용 준수

※ 마스크 관련 상세한 사항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21.4월, 중앙방역대책본부)' 참조.

Q1. (마스크착용_공통)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부적절 사례 확인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단,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위반 당사자) 위반차수별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예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전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입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입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Q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운영자가 처벌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⑧~⑫ 기타 수칙

Q1. (방역수칙 안내_공통) 방역수칙 게시물 중 몇가지 내용이 빠져있을 경우 행정처분 부과 대상인가요?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시설 관련 방역수칙에 대해 모두 다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운영자가 게시물을 부착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된 수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빠지거나 변동된 내용은 별도의 안내게시물을 부착할 필요가 있으며, 1회 적발 시 계도, 2회 이상 적발 시 행정처분 부과.

Q2. (방역수칙 안내_공통) 방역수칙 게시물 부착 시 어떤 내용까지 담아야 하나요?

- 이용자 수칙*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되, 출입문, 주문안내표, 시설 중앙벽 등 눈에 잘 띄는 장소 곳곳에 부착할 것.
 -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등
 - 안내게시물 미부착시 1회 현장 계도, 2회 이상 적발 시 행정처분 부과

※ (참고)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수분('21.5.21)

Q3. (환기_공통) 창문이 없는 시설의 환기 관련 수칙 준수 여부 확인방법은?

- 지하나 창문이 없는 시설 등은 환기설비나 출입문 등을 통해 하루 3회 이상 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환기시간을 게시할 것을 권고·계도.

Q4. (소독_공통) 법정 소독의무시설에 해당되어 정기적으로 소독필증을 보관하고 있어도 별도 소독 대장관리가 필요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른 소독의무시설은 평시의 관리 방법을 의미하므로,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독은 방역관리자 등을 별도 지정하여 표면 소독의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계도

Q5. (소독_공통) 소독 관련 현장점검 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시설별 일 1회~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독 방법 및 약품종류 등도 확인하고 계도.

Q6. (손씻기_공통) 시설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 출입문 및 시설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안내하고, 공용물품 등을 만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닐장갑 등도 비치하도록 안내·계도.

□ 무허가·무신고 등 이하 미등록시설 관련

Q1. 무허가·무신고 등 미등록시설일 경우에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조치의 대상은 인허가 시설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명령의 목적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임을 고려할 때 무허가 시설을 포함함.
- 따라서 무허가·무신고 등 미등록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 대법원 판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대판 1997.7.11. 96도3404,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 풍속영업에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 포함*되며, 풍속영업소 또는 풍속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법에규정된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또는 그와 같은 영업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실제로 하는 자를 의미
- *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 中]

- (기본 방역수칙)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 적용하고, 기타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업종 참고
-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기본방역수칙」(중수본, '21.7.24.)

주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① 집합금지 ② 영업시간 제한	고발조치	고발조치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법 제80조제7호 (300만원 이하 벌금)
③~⑫ 방역수칙 * 시적모임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항 ·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Q2. 무허가 시설 등 미등록시설일 경우 의 행정처분(운영중단 10일)은 불가한데, 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무허가, 무신고 등 불법 시설의 경우 시군구 행정관리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므로 운영중단 등의 처분이 불가하나, 무허가(무신고) 영업에 따른 부분은 각 개별법에 따라 처분* 가능
- * 예시) 비닐하우스에 업장을 차려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않은 자)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Q3. 미등록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벌금) 부과할 수 있나요?

- 미등록시설의 경우라도,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존재하므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또는 벌금(고발조치) 부과 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인증 관련

Q1.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① 종이증명서*, ② 전자증명서**, ③ 예방접종스티커***가 있음
 - * 「감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 COOV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를 통한 다운) 확인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 부착하여 사용

Q2.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외 예방접종증명서 인정 범위는?

- ① 종이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은 경우
 - ② 종이증명서를 복사한 사본의 경우
 - ③ 쿠브(COOV) 어플 등 증명서를 화면 캡처한 경우
 - ④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서비스 내 접종확인인 경우
- ①, ②의 경우는 인정. (단, 신분증 대조 후 인정 가능)
 - * ① : 증명서 현출 후 스캔 또는 사진 등으로 이미지파일로 변환 시 문서로 인정 (대판 2008도5200, 대판 2016도7269)
 - ② :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에서 인정
 - ③, ④의 경우는 불인정.
 - * 화면 캡처는 문서로 불인정(대판 2007도7480, 대판 2011도10468), 플랫폼 서비스 내 접종정보는 접종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 곤란

Q3. 시설 관리·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대상 및 위반시 처벌기준은?

- (확인 의무) 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적모임 제한 초과 인원 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Q1. 참조)를 확인하여야 함
- (위반 시 처벌)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능
 - 단, 이용자의 고의적 위·변조 및 부정 행사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제외 가능
 - * (과태료)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행정처분) :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4차이상 위반시 폐쇄명령

Q4. 시설 이용자가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때 처분기준은?

- 시설 이용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행사할 경우 **형법 적용 가능**하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위한 위·변조·부정행사를 할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도 병과 가능**
- (위반 시 처분기준 및 사례)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 (예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종이 또는 어플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또는 변조(정식 예방접종증명서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한 경우
 -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에 따른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 (예시)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참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를 행사한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 가능

- ▶ 또한, 사적모임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수칙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병과 가능
 - * 감염병예방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 감염병예방방법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 별표3(과태료의 부과)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시) 수도권의 경우 18시~22시까지 카페·식당에서 **2명만 모임** 가능하나, 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할 경우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9.6일~)

- (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 행사*) 형법 제230조에 따른 위조등 공문서의 부정행사로 보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이 경우도 사적모임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수칙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병과 가능

□ 기타

Q1. (목욕장업) 수면실 이용금지의 경우, 이용금지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무단으로 들어가 위반이 적발된 경우 관리·운영자 처분 여부?

- 시설 관리·운영자가 이용금지 안내 및 출입금지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무단 사용한 경우 운영자 처분 제외 가능. 이용자는 즉시 과태료 처분.

Q2. (체육시설) 공용공간 중 샤워실 이용금지 표시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관리·운영자를 처분해야 하나요?

- 샤워실 이용금지 안내 및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무단 사용한 경우 관리·운영자 처분 제외 가능. 이용자는 즉시 과태료 처분.

Q3. (체육시설) 거리두기 3~4단계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이 금지되어 운영자가 관련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노력하였음이 확인되었다면, 처분 제외 가능한가요?

- 운영자 및 관리자가 직접 접촉금지 운동에 대한 충분한 안내(관련 게시물 부착, 문자안내 등)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끼리 대련 등 하였을 경우, 운영자는 처벌 제외 가능. 이용자는 즉시 과태료 처분.

Q4. (기타) 방역수칙 위반 개수에 대한 처분 적용기준

- 1개의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사항)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
 - 즉, 대상자가 게시물부착 미준수, 손소독제 미비치 등 수개의 행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유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는 행정명령만 내렸다면 포괄하여 1개의 위반으로 간주(포괄일죄)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사례집(법무부)